

의안번호	2212379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F4590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범위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조제5항 신설 (과세표준)	-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은 경우, 주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은 주된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 - 해당 주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, 상속 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또는 대체취득한 주택은 주된 주택 소유자가 소유 또는 대체취득한 것으로 간주
2	안 제10조의2 (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)	-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 시 부부 중 1인을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고 주택 전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봄 - 부부를 제외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 중 1인(주된 주택소유자)을 부부가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봄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제5항 신설 (과세표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조의2 (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된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의 상속 등에 따른 주택 취득 시 주된 주택소유자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8조제5항 신설 및 제10조의2 개정)

- 개정안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
- 그러나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상속주택 등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